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48
----------	-------

발의연월일 : 2023. 12. 18.

발 의 자 : 강민정·윤영덕·신현영
이용선·이용빈·황운하
김경만·이원택·김한정
김한규·김상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하기 어려움.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

19조의2).

이에 더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수업 중 일시 분리) ①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여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

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 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임시 분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임시 분리된 경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상태에 있거나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를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기 어려운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④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상담업무가 과중하거나 급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 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18조의6(수업 중 임시 분리) ① <u>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u>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행위를 하여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 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임시 분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임시 분리된 경우 그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상태에 있거나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기 어려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④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학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교의 상담업무가 과중하거나 급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